

1. 의결주문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민간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(법률 제16625호, 2019. 11.26. 공포) 됨에 따라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아니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 범위를 정하는 한편, 건설근로자의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퇴직공제 납입액 대상공사를 공공은 3→1억원, 민간은 100→5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. .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8(소규모공사의 범위)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“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.

1.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
2.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공사

제83조제1항제1호, 제2호, 제2호의2 및 제4호 중 “3억원”을 각각 “1억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100억원”을 “50억원”으로 한다.

별표 7 제2호 아목부터 커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퍼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법 제22조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,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99조제3호의3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---	------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6조의8, 별표 7의 개정
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신 설>		제26조의8(소규모공사의 범위) 법		
		제22조의2제2항에서 “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.		
		1.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		
		2.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공사		
제83조(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)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.		제83조(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		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(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. 이하 제2호에서 같다) 이 3억원 이상인 공사	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억원 -----		
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 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이 <u>3억원</u> 이상인 공사	2. ----- ----- ----- -- <u>1억원</u> -----
2의2.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 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 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<u>3억원</u> 이상인 공사	2의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1억원</u> ----- 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」에 따른 민간투자사 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 사예정금액이 <u>3억원</u> 이상인 공 사	4. ----- ----- ----- ----- <u>1억원</u> ----- --
5.6. (생략)	5.6. (현행과 같음)
7. 공사예정금액이 <u>100억원</u> 이 상인 건설공사	7. ----- <u>50억원</u> -- -----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514